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8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:성일종·최수진·김상욱

고동진 · 장동혁 · 배준영

박덕흠 • 서지영 • 박성민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.

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,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 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8조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"를 "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"로, "설치하는 데에"를 "설치·운영하는 데에"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국유・공유 재산의 우선	제48조(국유・공유 재산의 우선
매각이나 유상·무상 대여) ①	매각이나 유상·무상 대여) ①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	
에 따른 <u>장애인복지시설을 설</u>	<u>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</u>
<u>치하거나</u> 장애인복지단체가 장	<u>· 운영하거나</u>
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	
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	<u>설치·운영하는 데에</u>
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	
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	
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	
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	
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	
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	
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